

문서번호	여성가족과-36780
결재일자	2015.11.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보육지원담당	여성가족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서희정	강영숙	김화복	11/02 도일환		
협 조					

2015년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지원계획

2015. 10

교육문화복지국
여성가족과

'15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

민간어린이집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충족 및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

I

사업개요

사업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(비용의 보조)
-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계획(시장방침 제465호, '03.7.10)
- 2015년 서울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(보육담당관-20344,2015.10.29.)

사업목적

- 민간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
-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서비스수준 격차 해소

지원개요

○ 지원대상

- 보육환경 개선 : 노후시설 개보수, 보육실 공간 재배치 등
- 위생시설 개선 : 비상대피시설, 방염설비, 화장실·급식시설 설치등
- 기타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등

○ 지원기준

보육정원	20명 이하	21~59명	60명 이상
지원금액	5백만원	6백만원	7백만원

※ 근거 :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(보조대상)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(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) 및 [별표 1]

구분	일반 어린이집	서울시 우수보육시설
서울시 부담	서울시 어린이집 규모별 <u>지원 한도액내에서 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</u>	서울시 어린이집 규모별 <u>지원 한도액내에서 총사업비의 100%까지 지원</u>
어린이집 부담	총사업비의 30%이상 부담	-

○ 재원분담 : 시비 70%, 어린이집 자부담 30%

○ 지원 조건 : 친환경 자재 의무사용

II

그간추진실적

□ 그간 추진실적

(단위:개소,천원)

구분	서비스수준향상 기능보강비						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	
	계		민간어린이집		가정어린이집			
	개소	지원액	개소	지원액	개소	지원액	개소	지원액
계	79	375,356	46	232,986	33	142,370	123	787,409
2009년	24	108,700	14	68,700	10	40,000	93	643,409
2010년	27	124,000	16	80,000	11	44,000	12	55,000
2011년	0	0	0	0	0	0	15	77,000
2012년	13	65,656	7	35,656	6	30,000	1	4,000
2013년	9	49,000	5	30,630	4	18,370	1	4,000
2014년	6	28,000	4	18,000	2	10,000	1	4,000

III

'15년 추진계획

□ 어린이집 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

- 최근 5년간('10.1.1 이후~현재) 기능보강비가 미지원된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
- 단, 석면교체 관련 공사는 별도 지원

○ 지원사항

- 보육시설 환경 개선
 - ▶ 노후시설 개보수, 보육실 공간 재배치
 - ▶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등
- 위생·안전시설 개선
 - ▶ 비상대피시설, 방염설비, 화장실·급식시설 개선 등
 - ▶ 실내공기질 개선, 점자블록 교체 등

□ 추진절차

구분	⇒	⇒	⇒	⇒
기관				
검토 사항				
	사업비 지원신청 어린이집 ① 사업계획서 제출 (견적서 등 포함) - 공사전 사진 - 건물주동의서 (임대시설인 경우 등)	신청사업/ 타당성 검토 여성가족과 ① 현장 확인 검토 - 사업 필요성, 타당성, 신청액 적정성 확인 -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가능성 확인 ② 지원기준 검토 - 한도액·비율·조건 확인 - 우선지원 및 행정처분지원제외 대상 확인	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과 ① 선정위원회심사 -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, 타당성 등 심사 선정 - 평가(선정)기준으로 평가, 고득점순으로 선정 - 동점일 경우 안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※ 배정액 내 지원 어린이집 우선 순위 결정	지원사업 선정결과보고 여성가족과 → 서울시 ① 지원 어린이집 우선순위 보고

□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

○ 지원사업 선정 및 제외기준

우선지원 사항	지원제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 관련 시설 - 비상대피시설, 방염설비 등 어린이 안전시설 개선 - 기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(시각 장애인 점자블록 교체 등) - 보육현원 정원 대비 70%이상인 어린이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행정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※ 시정명령 제외대상은 보조금 부정 관련 사항으로 한정

○ 지원사업 선정방법

- 선정위원회(보육정책위원, 공무원, 부모 등)를 구성하여 지원 어린이집 및 분야 선정
- 평가(선정)기준으로 평가 후 고득점 어린이집 순으로 선정

✦ 선정기준 및 배점 : 별첨#3 참조,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
 ✓ 시급성(30점), 사업의 타당성(10점), 정부평가 인증여부(10점), 자치구 자체평가(30점),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여부(5점), 현장확인(15점)

□ 사업계획서 변경승인

- 이미 지원이 확정된 사업중 2015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우리구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예비 우선순위 결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·지원하고 사후 보고
 - 미시행사업의 시비보조금은 반납조치하고 신규 선정 사업은 배정액 범위내 지원 (※ 어린이집 지원기준에 따름)
- 선정사업 추진내용 변경은 자체 변경 승인 후 사후보고
 - 선정사업 중 사업비 및 추진내용의 변경사항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
 - ※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사용 불가

사업비 집행 및 정산

○ 사업비 : 10,000천원(시비)

- 민간어린이집 서비스향상 기능보강
- 석면교체 관련 공사 : 별도 시행예정

○ 예산과목

-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, 어린이집 유지 보수, 민간자본이전, 민간대행사업비

○ 집행 및 정산

- 여성가족과(어린이집)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확행
-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액 30%이상 포함하고,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
 - 여성가족과(어린이집) 현장점검에서 총사업비 대비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70%초과 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
-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
 - ※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시 지원금 전액반납
-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용도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전액반납

IV

추진일정

- '15. 11. 2 ~ 11. 6 : 어린이집 계획서 접수(어린이집 → 여성가족과)
- '15. 11.9 ~ 11. 13 :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실시(여성가족과)
- '15. 11.16 ~ 11.20 : 지원 어린이집확정 및 예산교부 (여성가족과)
- '15. 11.23 ~ 12.24 : 사업시행(어린이집)
- '15. 12월 말 : 정산보고(어린이집 → 여성가족과)

V

행정사항

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 확인 철저

-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제출 : 자부담액 등 확인
 - 어린이집 자부담 30%이상, 공사전 사진, 건물주동의서(임대어린이집) 등
- 여성가족과 현장 확인 :
 - '15년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
 - 불필요한 공사, 허위 과다 신청,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

어린이집 선정 결과 제출 :

- 사업비 배정액 범위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
-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예비 어린이집(예산 미반영) 1개이상 선정
 -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우선 순으로 작성, 제출
 - 예비시설은 비고란에 “예비”로 표기(지원 우선 순으로 기재)

사업완료후 집행정산 철저

- 1차 어린이집에서 현장점검표에 의거 자체점검하고, 2차로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자체 현장점검 결과를 재확인 확행
 - 사업목적의 적정, 시비보조금 집행정산 적정, 기능보강 현장적정 등
-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정산서 작성보고

- 붙 임
1.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1부.
 2. 어린이집 선정기준 1부.
 3. 현장확인서 1부.
 4. 현장 점검표(보고서식)1부. 끝.